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198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인원정수	15 인	2 인
재적임원	15 인	2 인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16. 04. 04.		

1.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11시
2. 장 소 :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실
3.개회예배 : 고만호 이사장의 사회로 묵도 후 이사장이 말씀을 선포한 후 기도로 개회예배를 마치다
4.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인원
   -이사(9인) : 고만호, 노영상, 이희수, 임부성, 임화식
   주계옥, 조현용,최규연, 최원탁
   -감사(2인) : 신남식, 이충열
   ○ 결석인원
   -이사(6인) : 고훈, 김유수, 곽재욱, 박진석, 신민철, 이정달 -감사(0인) :
5. 개회선언 : 성수가 되므로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6. 절차보고(회순채택) : 이사회 서기가 절차를 보고하니 임시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별지 : 이사회 순)
   (동의 : 임부성 이사, 재청 : 임화식 이사)
7. 안 건
   1) **보고사항**
      (1) 학사보고
      (2) 감사보고
   2) 토의사항
      (1) 2015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2) 2015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3) 임원 선임에 관한 건
      (4) 총장 선임의 건
      (5) 교직원 인사의 건

신남식	최규연	원재성

(6) 허철선사택 임대보증금 처리의 건

(7) 기타 안건

8. 회의내용

1) 보고사항

(1) 학사보고

노영상 총장이 학사보고를 하니 유인물과 더불어 구두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동의 : 조현용 이사, 재청 : 임부성 이사)

(2) 감사보고

신남식, 이충열 감사의 감사보고는 서면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별지:감사보고서)

(동의 : 최원탁 이사, 재청 : 최규연 이사)

2) 토의사항

(1) 2015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2015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은 재정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2015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액 836,949천원을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동의 : 주계옥 이사, 재청 : 최원탁 이사)

(2) 2015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2015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은 재정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2015년도 교비회계 결산액 10,696,584천원을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동의 : 최원탁 이사, 재청 : 조현용 이사)

신남식	최규연	임부성

(3) 임원 선임에 관한 건(박진석, 이정달, 이희수, 임화식)

박진석 이사 후임으로 이상오씨와 이규용씨가 후보로
이정달 이사 후임으로 장윤재씨와 이태종씨가 후보로
이희수 이사 후임으로 김형준씨와 김재민씨가 후보로
임화식 이사 후임으로 장경태씨와 송재선씨가 후보로
총회신학교육부에서 공천하니 투표결과,
2016년 6월 17일자로 퇴임하는 박진석 이사의 후임으로
찬성 9명, 반대 0명으로 이상오 씨를,
2016년 6월 17일자로 퇴임하는 이정달 이사의 후임으로
찬성 9명, 반대 0명으로 장윤재 씨를,
2016년 6월 17일자로 퇴임하는 이희수 이사의 후임으로
찬성 9명, 반대 0명으로 김형준 씨를,
2016년 6월 17일자로 퇴임하는 임화식 이사의 후임으로
찬성 9명, 반대 0명으로 장경태 씨를,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동의 : 조현용 이사, 재청 : 주계옥 이사)

(4) 총장 선임의 건 (총장선임위원회 구성의 건)

총장 선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으로 하기로 하고
고만호, 김유수, 주계옥, 최규연, 최원탁, 임부성, 임화식 이사를
위원으로 한 총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임하기로 하다.

(동의 : 이희수 이사, 재청 : 노영상 이사)

(5) 교직원 인사의 건

① 김충환 교수의 건강상 휴직의 건을, 법규정 근거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필요한 절차는 총장에게 일임하다.

(동의 : 임부성 이사, 재청 : 임화식 이사)

* 법규정 근거:
-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제1항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와 그 제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호남신학대학교 정관 제38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와 그 제1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호남신학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5조(휴직사유)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교 "정관" 제38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직할 수 있다."

* 붙임 : 김충환 교수 휴직의 건 관련 업무지시서(총장)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2016년 3월 9일)

②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개정에 따른 교원인사 규정(수정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교직원인사규정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며 이사는 5명, 교수는 총장 포함하여 4명으로 하기로 결의하다.

이사: 고만호, 주계옥, 최원탁, 최규연, 조현용

교수: 노영상(총장), 3인(추후 총장 지명)

(동의 : 이희수 이사, 재청 : 노영상 이사)

(6) 허철선사택 임대보증금 처리의 건

허철선사택 임대보증금 처리의 건에 대해 노영상 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서 조정사항(1억2천5백만원) 이행을 2016년 05월 02일까지로 재요청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다. 또한 허철선사택 월세계약서 잔금 완납일을 임차인(The 1904)과 협의하여 2016년 05월 02일로 재조정하고 늦어진 잔금완납일(최초:2015년 9월 30일, 변경:2016년 5월 2일, 7개월 2일) 만큼 계약 종료일을 연장(2020년 12월 09일)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동의 : 최원탁 이사, 재청 : 주계옥 이사)

(7) 기타 안건

10. 폐회선언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최원탁이사가 폐회 동의한 후 최규연이사 기도로 폐회하니 12시 10분 이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이사장 : 고 만 호

이 사 : 노 영 상

이 사 : 이 희 수

이 사 : 임 부 성

이 사 : 임 화 식

이 사 : 주 계 옥

이 사 : 조 현 용

이 사 : 최 규 연

이 사 : 최 원 탁

감 사 : 신 남 식

감 사 : 이 충 열